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나. 창업기업 범위 (안 제3조)

-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등(안 제5조)

-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인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가능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 중기부 장관은 제3자에게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도록 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다.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중 부담금 면제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라.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안 제13조)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리.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

- 해외 창업지원기관의 자격은 교육이 가능한 창업공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에게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지원,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투자유치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함

마.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안 제25조)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처분 30일 전에 해당 처분 대상자가 공장설립 계획을 변경하거나,
 - 공장건축을 하도록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

바.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안 제39조)

- 특허청이 자료를 제공할 때,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은 정보 제공 목록에서 제외
- 중기부 장관이 특허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마.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안 제40조 신설)

-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1조)

- 창업활성화사업,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전부개정안 전문 첨부

2) 1차 입법예고(2022. 2. 11. ~ 3. 23.)

2차 입법예고(2022. 4. 26. ~ 5. 18.)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하였으면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

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하여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인 자가 새로 설립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로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

7.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 기간을 법인전환 창업기업(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였던 날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 동안 창업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창업지원정책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인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협의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정책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정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창업교육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육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특화형 신산업·기술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과 관련한 부처 간 사업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9.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시제품 제작 지원

제7조(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 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기업의 유형, 업종 및 창업기간 등 창업 전반의 현황
 2. 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의 재무·자금, 인력·조직 등 창업기업의 경영 실태
 4.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한다.

1. 창업지원사업 관련 정보
2. 창업공간 정보
3. 창업 교육 정보
4. 창업지원사업의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성과 정보
5.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6.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 관련 정보

② 법 제15조제1항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받아 보유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그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뤄진 범위 내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 중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

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부담금 면제 대상이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 관련 기업가센터 운영

3.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구 관리

5. 해당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지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등 지원
7.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해당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9.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 유망 창업기업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창업기업 중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별표 2에 따라 산정하여 20퍼센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계획의 도전과 창의성
 3. 목표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의 평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성장 유망 창업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 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5조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창업기업 관련 통계 및 창업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

2. 창업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관리
 3.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지원
 4. 창업기업 제품 등록 및 홍보
 5. 그 밖에 창업기업 확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이 가능한 창업공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에게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지원,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2.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투자유치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정부는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보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자료 조회 요청)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는 별표 3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조회

를 요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은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성실경영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실경영 평가의 결과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실적을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20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기업은 공장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4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법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장건축면적(법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2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민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장설립 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2. 창업 관련 사전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창업기업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를 위한 필요사항 등
- ③ 위원장은 공장설립 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시·군·구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회를 개최한다.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 및 안건을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공장 설립계획 허가·인가 업무처리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 제45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때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의 공장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할 때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장설립계획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 전체가 「건축법」 제2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 범위에 해당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사전 협의 절차)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기업은 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 계획의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5조(공장 설립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

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처분 30일 전에 해당 처분 대상자가 공장설립 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① 창업진흥원은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 창업 관련 교육·출판, 행사·홍보 사업
3.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창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으면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1항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③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될 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제3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 법 제54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등록취소·지원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3. 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창업지원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창업지원기관) 법 제5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4.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
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6. 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7. 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8.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기관

제37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평가 및 추천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5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0조 및 제26조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업무
5.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임·위탁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창업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는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정보 및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를 말하며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국제공개되지 아니한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허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요청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 학교, 기관, 단체(이하 “창업지원주관기관”

이라 한다)가 사업 수행의 지연 또는 정지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창업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활성화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사무
6.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창업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4조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공장설립 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승인취소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제9장 별칙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식서비스업(제10조제5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KSIC 10
J (58~63)	정보 통신업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11	공영 우편업	61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K (64~66)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4
				642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9	기타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51	보험업	65
				652	재보험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M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712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3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4
				715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715
				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	716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1
N (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751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13조제1항 관련)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 \sqrt[n]{A/B} - 1$$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 관련)

1. 법 제43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 대상 범죄	가.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제357조의 죄(미수범 포함) (2) 「형법」 제207조부터 제213조까지의 죄 (3) 「형법」 제214조에서 제217조까지의 죄 (4) 「형법」 제315의 죄 (5) 「관세법」 위반 (6)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7) 「대외무역법」 위반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1) 「상법」 위반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15) 「조세범처벌법」 위반 (16)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죄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산업재산권 범죄	(1) 「디자인보호법」 위반 (2) 「상표법」 위반 (3) 「실용신안법」 위반 (4) 「저작권법」 위반 (5) 「특허법」 위반
	다. 식품·보건범죄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5) 「식품산업진흥법」 위반 (6) 「식품위생법」 위반 (7)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8) 「축산법」 위반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10) 「약사법」 위반 (11) 「의료법」 위반
	라. 환경범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 「먹는물관리법」 위반 (5) 「물환경보전법」 위반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7)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8) 「수도법」 위반

		(9)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11) 「지하수법」 위반 (1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13) 「폐기물관리법」 위반 (14) 「하수도법」 위반 (15) 「하천법」 위반 (16)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 컴퓨터(사이버)범죄	(1) 「형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및 제144조의 죄 (2) 「형법」 제227조의2, 제228조 제1항 및 제229조의 죄 (3) 「형법」 제232조의2 및 제234조의 죄 (4)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죄 (5)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죄 (6) 「형법」 제366조, 제368조 제2항 및 제369조 제1항의 죄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에서 제11호까지의 죄
2. 법 제43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 대상 범죄		(1) 「근로기준법」 위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3) 「최저임금법」 위반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9) 「직업안정법」 위반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12)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13) 「고용보험법」 위반 (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7)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 관련)

경 영 분 야	기 술 분 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등록취소·지원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나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각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지원중단 12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창업대학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창업대학원이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다. 창업대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마. 해외창업지원기관이 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바. 해외창업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사. 지역창업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아. 지역창업전담기관이 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자. 지역창업전담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56조 제3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차.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카.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 제4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법 제56조 제4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파.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56조 제4항제4호	지정취소		
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법 제56조 제4항제6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거.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6조 제5항제1호	등록취소		
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5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5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러.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5항제4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6]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의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감면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니 아니할 수 있다.

- 1)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합산기준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7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 창업지원주관기관이 대응자금 확보 등 선정 필수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3년
나) 창업지원주관기관이 협약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1년 이내
다) 창업기업등이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라) 창업기업등이 협약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이		1년 이내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2호	3년
가) 창업지원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나)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1년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3호	3년
가) 창업지원주관기관이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 유용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년
나) 창업기업등이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 유용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4호	3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5호	3년
6)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6호	
가) 창업지원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의 지연 또는 정지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3년
나)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	1년
다) 가)와 나)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	제40조제1항제3호	3년 이내

기 부적합하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u>500</u>
나.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실경 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u>500</u>
다. 법 제51조제9항을 위반하여 창업진 흥원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u>500</u>
라.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부 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사용하 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 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 1차 위반		<u>200</u>
2) 2차 위반		<u>400</u>
3) 3차 이상 위반		<u>500</u>
마.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1) 1차 위반		<u>200</u>
2) 2차 위반		<u>400</u>
3) 3차 위반		<u>500</u>
바.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500
사.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였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u>500</u>
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200
3) 3차 이상 위반		300
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제출·보	법 제66조제2항	<u>300</u>

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 부·방해하였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u>300</u>
---	-----------	------------